

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3. (장철규 의원 등 7명)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5. 7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
(2024. 5. 22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 (장철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우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우하고,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화성시 기업의 사기진작 및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영혜 전문위원)

가.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, 기업인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

나.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, 우수기업 선정대상 확대와 기업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기업인들의 사기진작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화성시 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3. (화성시장)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5. 7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
(2024. 5. 22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 (기업지원과장)

가. 제안사유

- 다양한 고용노동현안 및 지역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「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6항에 따라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 하부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위원 참석 수당에 대한 용어정비 및 하부협의회 위원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영혜 전문위원)

가. 본 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하부 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과 협의회 참석 수당 용어정비와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

나.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, 하부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체계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3. (화성시장)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5. 7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
(2024. 5. 22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 (오수관리팀장)

가. 제안사유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‘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’을 마련토록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1. 7. 20.) 및 시행(2023. 7. 21.)됨에 따라 행안부 표준안과 같이 시장의 책무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영혜 전문위원)

가. 본 개정조례안은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같이 시장의 책무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

나.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, 개정된 법률에 근거한 표준안으로 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농업재해 복구비 등 지원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3. (위영란 의원 등 7명)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5. 7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
(2024. 5. 22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 (위영란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국가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등 지원으로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영농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영혜 전문위원)

가. 본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국가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

나.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,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소규모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농업인들의 생산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생업 종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3. (조오순 의원 등 7명)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5. 7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
(2024. 5. 22. 수정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 (조오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경기도 화성시, 안산시, 시흥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 지역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영혜 전문위원)

가. 본 조례안은 화성시, 안산시, 시흥시에 걸쳐 있는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

나.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, 본 조례안을 근거로 관광·해양레저·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, 학술교류,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등 시화호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수정가결 (수정대비표 별첨1)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(별첨1)

수정 대비표
[화성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]

수 정 전	수 정 후
제3조(책무 등) 화성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 라 한다)는 시화호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	제3조(책무 등) ----- ----- <u>은</u> ----- ----- -----.

화성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3. (조오순 의원 등 7명)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5. 7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3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
(2024. 5. 22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 (조오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화성시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이영혜 전문위원)

가. 본 조례안은 폐농약 및 용기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

나.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, 본 조례안을 근거로 폐농약류 및 농약용 용기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토론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